

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2026
제5·6호



미국 동향



무역확장법 제232조 일부 품목 관세 한시 조정 (6.1.)

- 부속서 1-C를 신설하여 이동식 산업기계 등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화된 관세율 적용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및 판결

-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한국에 12.5% 적용 제안 (6.2.)
- 연방대법원, 중국산 제301조 관세 적법성 인정한 항소심 판결 유지 (6.15.)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서명 (6.3.)

- 현행 관세 집행 체계 보완
- 수입신고인(IOR) 요건, 신고·관세심사·제재 절차 강화



관세회피 단속 동향

-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 적용으로 반덤핑관세 회피 인정 사례



베트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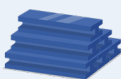
관세위반 제재 체계 개편

- 기존 관세 분야 행정위반 제재체계를 개편
- 수출물품 가공·생산시설 및 보관장소 변경 미통지 등 통지·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고위험 물품 대상 이력추적 체계 추진

- 고위험 제품의 원산지·제조정보 및 공급망 이력정보 기록 의무화
- 정부 추적플랫폼 또는 자체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연계체계 구축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 18개 위험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서류 및 표시정보의 일치 여부 집중 점검
- 기업의 생산시설·생산능력 확인 등 실질적 원산지 검증 강화

·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최근 관세·원산지·공급망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번 동향의 대상국으로 선정함

미국 관세·원산지 동향 최신 주요 뉴스



미국과 멕시코가 USMCA 공동검토와 관련한 1차 양자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자동차 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

Reuters (5.29.)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권리 보호·집행 방식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함

연합뉴스 (5.30.)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5% 추가관세 부과 추진함

연합뉴스 (6.2.)



미 법무부가 IEEPA 관세 환급 대상을 소송 참여 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환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

AP (6.10.)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높임

연합뉴스 (6.11.)



독일이 의료보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혁신 의약품 지출 감축 정책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함

Reuters (6.19.)

1 베트남 관세위반 제재 체계 개편
시행령 제169/2026/ND-CP호, 2026.7.1. 시행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5일 관세 분야 행정위반 제재 체계 현대화 및 세관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행령 제169/2026/ND-CP를 공포하였음. 동 시행령은 기존에 적용되던 법령 제128/2020/ND-CP호를 대체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주요내용
[베트남 관세 제재제도의 주요 변화]

구분	종전	시행령 제169호
신고 오류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일부 신고 오류도 행정처벌 가능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고 오류에 대한 과태료 삭제
관세 통지·보고 의무	통지·보고 관련 위반 범위가 제한적	통지·보고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행정처벌 제외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자진 보충신고·수정이 인정되는 범위 확대
처벌 절차	주로 종이문서 기반	전자적 위반조서 작성 및 처벌결정 발행 가능
처벌 권한	세관기관이 주요 처벌 권한 행사	공안당국 소속 기관·담당자의 처벌 권한 확대

출처: Vietnam Briefing, 「Vietnam's New Customs Penalty Decree: Key Compliance Changes for Importers and Exporters」, 2026.6.4

- **(제재조항 합리화)** 과세 대상 수입물품의 수량·품명·원산지·HS코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미한 신고상 오류에 따른 제재 부담을 완화함
 - **(관세 위반 범위 조정)** 수출물품 가공·생산시설의 부지, 주소, 보관장소의 변경 등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행령 제167/2025/ND-CP의 통지·보고 의무를 반영하는 한편, 법정 요건을 충족한 보충신고·수정 등은 행정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집행절차 디지털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위반조서 작성 및 처분결정서 발부를 허용하여, 종이문서 기반 행정절차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자적 집행문서 관리를 확대함
 - **(공안당국의 제재 권한 확대)** 공안당국이 관할 범위 내 세관 단속 관련 위반에 대해 사안과 처벌 권한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물품 몰수 및 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순 신고오류에 따른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고의무 등 주요 관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자발적 정정과 자료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베트남 산업무역부 고위험 물품 대상 추적체계 추진 시행규칙 제31/2026/TT-BCT호, 2026. 6. 11. 공포

개요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고위험 상품의 안전성 및 시장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령 제37/2026/NĐ-CP에 따른 「산업무역부 관리 대상 제품·상품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31/2026/TT-BCT)을 제정하고, 국내 유통품과 수입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적관리 체계를 구체화함

주요내용

- 동 규정은 산업무역부가 관리하는 고위험 품목에 대해 국내유통 및 수입 시 이력 추적을 의무화함. 기업은 제품별로 제품명, 제조자, 제조장소, 원산지, 브랜드, 로트번호, 시리얼번호, 유효기간 등 기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함
 - 또한 기업은 단순 제품정보뿐 아니라 공급망 내 주요 이력정보를 기록하여야 함. 규정은 공급망 내 "핵심 추적 사건(Critical Tracking Events)"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 입고, 생산, 가공, 포장, 운송, 판매 등 제품의 이동 및 변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체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특히 기업은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추적플랫폼(VeriGoods)⁷을 활용하거나 자체 ERP·MES 등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나,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무역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또한 API 방식의 데이터 연계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공급망 데이터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제품이력 추적 제도는 국내 유통 상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제공 정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점차 고도화 되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7 <https://www.verigoods.vn/>

3 베트남 재무부 관세국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17552/CHQ-GSQL, 2026. 6. 16

개요

-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및 무역구제조치 회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베트남은 원산지 위조 및 불법환적의 주요 경유국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재무부 관세국은 2026년 6월 16일 공문 제17552/CHQ-GSQL호를 발표하고 전국 세관에 원산지 위조 및 불법환적 위험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지시함

주요내용

- **(고위험 품목 지정 및 감시강화)** 재무부 관세국은 원산지 위조 및 불법환적 가능성이 높은 위험품목군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특히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자료와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제품 라벨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함
- **(세관 검사 및 감독시 유의 유형 5가지 명시)** 동 지침에서는 세관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관리 과정에서 세관이 유의해야 할 부정 수법을 유형화하여 구체화함

①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품의 단순 가공·조립 후 원산지 허위 표시

-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한 뒤,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 가공 또는 조립'만 수행하고도 세관 신고서 및 포장에 '베트남산'으로 명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② 다수 회사 설립을 통한 부품 분할 수입 및 부당 라벨링

-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다른 회사에 넘겨 단순 조립하게 함으로써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품임에도 '베트남산' 라벨을 부착해 내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③ 외국산 물품 수입 후 서류를 합법적인 것처럼 원산지 위장

- 외국산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정상적인 수출을 위해 관련 서류를 합법적인 것처럼 하거나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는 행위

④ 허위 계약 및 서류 재활용을 통한 원산지증명서(C/O) 절차 악용

- 수입 원자재의 출처를 숨기고 국내 구매에 대한 허위 계약을 작성하거나, 하나의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여러 수출 신고에 중복 사용하고,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류를 재활용하는 등 C/O 발급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⑤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품의 베트남산 표기 수출

- 세부적인 가공법이나 서류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이나 포장에 베트남산으로 표시했거나 세관에 베트남산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상품을 수출하는 포괄적인 위반 행위

- 아울러 기업의 생산능력과 실제 수출실적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함. 이는 단순히 서류상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기업이 실제로 해당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 이번 조치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공급망 구조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증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은 원산지 판정자료뿐 아니라 생산공정, 원재료 조달내역, 제조기록 등 실질적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